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75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제220167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지원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노력 의무 신설 (안 제46조의2)	3
나.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안 제46조의9)	8

I.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제220167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7. 12.

다. 회 부 일 : 2024. 7.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거의 전무함. 부산의 경우에도 주거단지에 밀집되어 있을 뿐, 산업단지 내에 돌봄센터가 있는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근로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

깨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제46조의2 제4항 및 제46조의9 신설).

3. 검토의견

가. 지원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노력 의무 신설 (안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 종사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이 조성되는 지원단지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¹⁾에 따라 시·도지사 및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임²⁾.

개정안은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녀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설치되는 지원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안정된 근무 여건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수적인 근로자의 원활한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초등학교에서 실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년도 기준)

총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린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
903개	40개(4%)	359개(40%)	241개(27%)	195개(22%)	21개(2%)	47개(5%)

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정책인 늘봄학교³⁾와의 정책적 유사성이 상당 부분 있어 보이므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원단지 내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늘봄학교 등 타 돌봄제도의 존재 여부 및 인근 지역의 교육·보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설치 장소를 유연하게 선정하는 방안⁴⁾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46조의⁵⁾에 따른 지원단지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음.

3) <늘봄학교 주요 내용>

- 교육부가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희망하는 초등학교생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시스템
- *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교생
- ** '24~'25년, 다른 학년에게는 기존의 방과후·돌봄 제공

4)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별표 1의2, 참고자료 1)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할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외 그 밖의 장소에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원단지 추진현황(24년 7월 기준) >

	면적 (천㎡)	사업비 (억원)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추진현황
충북 제천 제천 일반산단	276	440	제천시장	‘13~‘19	준공완료(‘19.3)
충남 예산 예당일반산단(2공구)	48	108	(주)금송산업 개발	‘12~‘24	지정(‘13.12) 보상공고(‘24.下)
전북 완주 완주테크로밸리	394	900	(주)완주 테크노밸리	‘13~‘24	지정(‘14.12) 부지준공(‘24.12)
경남 창녕 대합일반산단(2단계)	254	877	(주)승원개발	‘13~‘25	지정(‘14.12) 보상공고(‘24.下)

※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30.> [유효기간 : 2022년 4월 16일]
제3호나목5)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나.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안 제46조의9)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법 제45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8까지⁶⁾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입주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지원단지의 조성 특례, 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 각종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조치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⁷⁾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경우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입주기업 내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한 근로자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⁹⁾를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¹⁰⁾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¹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9)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2024년 7월 현재,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은 129개임(국토교통부).

11) 「아동복지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 경비 등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¹²⁾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¹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¹⁴⁾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문 의 처

02)6788-557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3) 「영유아보육법」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